장공련 공지 2021003호

2021년 10월 15일

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 회원사 여러분께

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

회장 우오타니 마사히코

**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내수성 측정법 기준 제정에 대하여**

귀사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합니다.

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는 이번에 “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자외선 방지 효과에 대한 내수성 측정법 기준＜2021년판＞”을 작성하여,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자율기준으로 2022년 12월 1일부터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
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에 내수성 효과를 기재할 경우, 본 자율기준에 따라 측정, 판정,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

**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**

**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내수성 측정법 기준 ＜2021년판＞**

1. 내수성 측정법

ISO18861 Cosmetics - Sun protection test methods - Percentage of water resistance에 따라 측정한다.

2. 내수성 판정 방법

ISO18861에 따라 측정하여 얻어진 내수성(SPF의 유지율) (%Water Resistance)의 평균값의 90% 신뢰한계 하한값이 50% 이상일 때 내수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.

3. 내수성 표기 내용

수조조건에 따라 아래의 표기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
3-1) 총 40분(20분 x 2회)의 수욕조건인 경우

내수성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“UV 내수성★” 또는 “UV 내수성☆”이라고 표기한다.

3-2) 총 80분(20분 x 4회)의 수욕조건인 경우

방수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“UV 내수성 ★★” 또는 “UV 내수성 ☆☆”이라고 표기한다.

4. 내수성 표기 방법

내수성 표기를 할 경우, 내수성 시험을 실시하기 전의 SPF 값을 병기할 것. 또한, 이 SPF 표시는 2011년 10월 5일자 23장공련 제12호 “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SPF 측정법 기준 개정에 대하여”의 SPF 산출방법에 따른다.

5. 본 기준 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간

본 기준의 발효일은 2022년 12월 1일로 한다. 또한, 경과조치 기간으로 2024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은 종전의 표시를 할 수 있다.

이상